

단체표준인증 운영규정

제정 2013. 09. 13

개정 2014. 07. 3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 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보급하여 이차전지의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 효율의 향상, 생산기술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차전지 분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방침) 단체표준인증시스템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방침을 설정하여 선언한다.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제품인증기관으로서 인증신청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품인증업무의 품질방침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선언한다.

- I. 우리는 공정한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 II. 우리는 제품의 공급자 및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인증업무를 행한다.**
- III. 우리는 배터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품인증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상기 품질방침을 확실히 이해하고, 실시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품인증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품질시스템 규정을 준수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등의 업무를 행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단체표준”이라 함은 단체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하며, “단체표준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2. 제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위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
3. 제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포장방법
4. 제품에 관한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측정방법
5. 제품 제조기술에 관한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 수 또는 단위
6. 기타 제품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제 2 장 위원회 등

제4조 (단체표준 심의위원회 등) ① 협회는 단체표준제도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와 단체표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장심사보고서와 제품시험 성적서로 인증여부의 결정을 위한 심의를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단체표준 초안 작성을 위한 검토와 심의를 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단체표준의 제정 등

제5조 (단체표준의 제정 범위) ① 협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을 제정, 개정, 확인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제정할 수 있는 단체표준의 제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
2. 관련분야의 한국산업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단체표준의 제·개정 등) ① 협회가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또는 그 표준제정 또는 개정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할 수 있다.

② 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협회에 그 제정 또는 개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협회가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단체표준안 심사 등) ① 협회는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표준의 적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 단체표준 최종안을 확정한다.

제8조 (단체표준의 관리) ① 협회는 제정 또는 개정된 표준에 대하여 제·개정된 날로부터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절차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한다.

② 협회가 한국산업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산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년 이내라도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9조 (단체표준의 공지) 협회는 단체표준을 제정, 개정 폐지 또는 확인한 때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단체표준 인증단체 운용요건

제10조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운용요건) ① 협회는 단체표준인증 단체로서 단체표준인증 및 단체표준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시험설비의 확보
2. 인증심사원의 확보
3. 단체표준인증업무 규정의 보유

② 전항 1호 및 2호의 경우 전문설비 및 인력을 확보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단체표준표시의 인증

제11조 (단체표준 표시 인증 신청) ① 단체표준표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단체표준표시 인증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는 규정 제13조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청의 철회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신청을 한 신청인이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 협회는 관계서류를 반려한다.

제13조 (인증심사) ① 협회는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하는 경우에 인증신청이 협회에서 정한 인증심사기준 및 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는 제조설비, 검사설비, 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로 한다.

1.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심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 (이하 “공장심사”라 한다.)

2.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표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 (이하 “제품심사”라 한다.)

제14조 (단체표준표시의 인증 등) 협회는 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판정기준 및 표준에 적합할 때에 단체표준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의신청) 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이 그 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을 한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후관리

제16조 (사후관리) ① 협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에 대하여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단체표준표시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특별사후관리 및 시판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협회는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특별사후관리 및 시판품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제품 또는 기술적 생산조건이 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인증받은 자에게 그 제품의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인증의 취소) ① 협회는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특별사후관리, 시판품조사 등의 결과가 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취소일로부터 1년 안에 인 증신청을 할 수 없다.

제19조 (청문)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인증서등의 반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인증서 등을 협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1. 당해 표준이 폐지된 때
2. 당해 인증이 취소된 때
3. 폐업한 때

제21조 (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①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 등을 잃어버리거나 인증서 등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단체표준표시인증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②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 등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 14호 서식의 단체표준표시인증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 등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22조 (승계) 제14조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제23조 (보고 및 감사) 협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인증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수수료) ①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 21조 규정에 의해 인증서등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비용, 수수료 또는 인증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수수료 또는 인증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자체점검 등) 협회는 인증심사 또는 사후관리업무가 신속·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한국산업표준의 지위승계) ① 한국산업표준을 단체표준으로 전환하는 경우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② 한국산업표준이 단체표준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는 KS 표시인증제품은 우수단체표준제품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시 인용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산업표준화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다.

제3조 (단체표준제품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 단체표준제품인증은 개정 규정에 의한 인증으로 본다.